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개정)

1) 영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나.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등(안 5조의2 신설)

1)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한 기준 설정

- (산불)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불) 위험등급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이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사태등) 위험등급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주민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 산림청장의 주민대피계획 보완 요청,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의 지역 주민 알림, 대피계획 시행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산불방지를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명시(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 신설)

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 시설물 주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입목 제거를 위한 시설물의 범위 설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①국가유산,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의 ②국가중요시설, ③기타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시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기준 설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 ①입목 제거를 위한 계약 체결, ②시설물 인근 입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③산불예방·진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④기타 제거 필요성이 적은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안 제39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의무 이수 횟수(임기 중 2회 이상) 등 명시

마.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1) 산림재난방지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의 보완요청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은 산림청장이 관리

바. 과태료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9조, 별표 6 개정)

1) 산불예방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설정(안 제49조)

- (법률 상향) 과태료 최대 부과액을 200 → 300, 70 → 100, 30 → 70만원
- (위반 횟수별) 1차는 최대 부과액의 1/3 부과

위반행위	구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현행	5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현행	2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현행	5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현행	20	40	70
	개정	30	50	100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현행	10	20	30
	개정	20	30	70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현행	10	20	30
	개정	20	30	7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2) 입법예고(2026. 9. 7. ~ 2026. 10. 19.)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 :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산림재난 위험등급(산불 위험등급을 말한다)이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산사태등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산림재난 위험등급(산사태등 위험등급을 말한다)이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 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 이 영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2.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피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소유자가 입목 제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입목 제거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 인근의 입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3. 산불예방·진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입목을 제거할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등)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와 역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대피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9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	90	150	300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	90	150	300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79조제3항	30	50	100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79조제2항제2호	90	150	3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법 제79조 제4항제1호	20	30	70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법 제79조 제4항제2호	20	30	70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79조 제2항제3호	50	100	200
아.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	250	350	500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 ② (생략) ③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u><신 설></u>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u> -----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산불 :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산림재난 위험등급(산불 위험등급을 말한다)이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u>

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산사태등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산림재난 위험등급(산사태등 위험등급을 말한다)이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산림재난 대비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대피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생략)

<신설>

라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 이 영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

<신 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2.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피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소유자가 입목 제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입목 제거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 인근의 입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3. 산불예방·진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입목을 제거할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9조의2(지방자치단체장 산림
재난방지 교육 이수 등)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산림
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지
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
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임무와 역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
6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지방자치
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5조

의2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대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③ ~ ⑤ (생략)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 제2항제1호	20	100	200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79조 제3항	20	40	70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항-----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 제2항제1호	90	150	300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 제2항제1호	90	150	300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79조 제4항	30	50	100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79조 제2항제2호	<u>50</u>	<u>100</u>	<u>200</u>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79조 제2항제2호	<u>90</u>	<u>150</u>	<u>300</u>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법 제79조 제4항제1호	<u>10</u>	<u>20</u>	<u>30</u>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법 제79조 제5항제1호	<u>20</u>	<u>30</u>	<u>70</u>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법 제79조 제4항제2호	<u>10</u>	<u>20</u>	<u>30</u>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법 제79조 제5항제2호	<u>20</u>	<u>30</u>	<u>70</u>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79조 제2항제3호	50	100	200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79조 제3항	50	100	200
아.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	250	350	500	아.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	250	350	50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2.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기상정보 등에 관한 자료
3.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2.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2. 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 :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산림재난 위험등급(산불 위험등급을 말한다)이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산사태등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산림재난 위험등급(산사태등 위험등급을 말한다)이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대피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대피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재난대피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 이 영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해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2. 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
3.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

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반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상황반원 및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2.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피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소유자가 임목 제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임목 제거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 인근의 임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3. 산불예방·진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임목을 제거할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 산림병해충 방제
3. 학술연구조사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나. 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

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 현지점검의 결과
-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 4. 안전조치의 방법
- 5. 안전조치의 기한
-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법 제27

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진단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산불의 위험 정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2. 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2. 민간항공기 운영자
3. 그 밖에 산림보호, 재난대응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사유, 장비·인력의 규모, 요청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말이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

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지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3.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 산불 진화 교육·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 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1.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방제사업 설계·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

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

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2.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3.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4.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반출·가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복구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 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3. 현장 관찰 및 기록

4. 증거물 수집·채취

5. 조사보고서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

전문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司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사

2.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④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평가해야 한다.

- 1. 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
- 2. 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
- 3. 시행계획의 적절성
- 4. 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 5. 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사태등 조사·복구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사태등 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산사태등 피해지 현장조사 등 조사
3.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② 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평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사태등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사태등 대응과정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4.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평가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림병해충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림병해충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산지 접근성
2. 산림재난 위험성
3. 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
4. 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9조의2(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등) ①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와 역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경비 산출 명세
3. 사업의 활용계획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공립 연구기관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지도·감독)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

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장애보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례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
2. 법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
3. 법 제69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

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실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 계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대피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현지점검 실시

⑤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 중 시·도지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단에 위탁한다.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조치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